

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제정	1996.	3.	1	조례 제 4호
개정	2000.	4.	6	조례 제 263호
	2005.	10.	5	조례 제 623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
	2008.	5.	9	조례 제 943호(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	2017.	10.	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22.	1.	6	조례 제226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8. 5. 9, 2022. 1. 6>

제2조(범위) 용인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5. 10. 5, 2008. 5. 9, 2017. 10. 2, 2022. 1. 6>

1. 제1부시장, 제2부시장
2. 용인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, 담당관·과장급
3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
4. 용인시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실·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
5. 법 제13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0. 4. 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23호, 법무행정 처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일반규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부칙 <2008. 5. 9 조례 제943호,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”를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중 “법 제104조 내지 107조”를 “법 제113조 내지 116조”로 한다.

제2조제5호중 “법 제108조”를 “법 제117조”로 한다.

② 내지 ⑤ 생략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⑧ 「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, 제2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⑨ 및 ⑩ 생략

부칙 <2022. 1. 6 조례 제2262호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